

미연방 대법원 판결과 언론의 보도

오켈러건, 듀크스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 (1992 년 봄호)에 실린 Jerome O'Callaghan (텍사스공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과 James O.DuKes(석사)의 「Media Coverage of the Supreme Court's Caseload」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미연방대법원이 공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연구는 Gregory Caldeira가 행한 연구이다. 그는 「대체적으로 연방대법원에 대한 공중의 신임은 정책 지향적인 판결에 따라 움직인다... 또 공중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사건과 이에 대해 대법원이 취한 행위에 따라 대법원의 판사를 평가하는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Caldeira는, 연방대법원과 그 판결, 그리고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위상 등에 관해 공중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 연방대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연방대법원과 그 활동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높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0 년대에 연방대법원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백악관이나 의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았다. 오직 공중의 일부만이 연방대법원과 그 판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방대법원에 관한 공중의 이해는 주로 언론보도에 의존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언론매체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중이 연방대법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그 판결에 대한 보도의 양을 비교하였다. 언론은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보도할 수는 없다. 「의제설정」(agenda-setting)이라는 언론 고유의 기사 선택권은 법원의 판결과 그에 관한 보도기사와의 차이를 야기한다 그러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짐작하건대 몇몇 판결은 상당히 많은 지면에 보도되지만, 다른 판결들은 보도되지조차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이 보도되는 문제들이 소송사건 일람표상에는 가장 적게 등장하는 문제들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신문, 시사주간지, TV 등 3 개 유형의 매체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어떤 주제에 관한 판결들이 가장 많이 보도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의제설정기능과 대법원에 대한 공중의 지지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매체가 연방대법원 관련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특정 판결을 보도한 기사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신문이 사건 판결문의 센세이셔널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판결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이 드러났지만, 언론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 보도하는가에 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 그 다음의 연구들은 특정 매체와 법원관련 보도기사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1974년에 3개 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방대법원관련 보도기사를 연구한 David Ericson은, 통신을 받아 기사화한 다른 신문의 기사에 비해 New York Times지의 기사가 더 정확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New York Times지도 112건의 판결가운데 32건만 완전히 보도했을 뿐이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3개 시사주간지를 연구한 Michael Solimine은 연방대법원에 관한 보도가 양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몇몇 판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도했지만, 그 보도의 양은 연방대법원 판결의 15%에 지나지 않았다. 동등한 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과 수정헌법 제 1조에 관한 판결은 넓은 지면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경제관련 판결은 별로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 판결건수와 보도된 판례를 실질적으로 비교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사주간지의 선택에 관한 Solimine의 분석은 지극히 간단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4년간의 대법원관련 보도를 연구한 Richard Davis는 「보도된 판결의 대부분이 낙태, 강제버스통학, 사형, 외설물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기타 유형의 소송을 제외하면 그런 유형의 소송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한 보도방식은 분명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법원이 말려든 것으로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Davis는 대법원의 판결건수와 언론의 보도정도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소송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좀더 많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대법원 소송사건에 대한 기사를 검토함으로써 어떤 문제들이 주로 기사화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Solimine의 연구결과에 따라 3개의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경제문제 관련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전체판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덜 보도될 것이다. 둘째, 수정헌법 제 1조와 관련된 판결은 전체판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될 것이다. 셋째, 시민권과 관련된 판결 역시 전체판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보도율은 높을 것이다.

소송건수에 관한 자료는 NLJ(National Law Journal)의 대법원 판결요약을 참고로 하였다. NL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986년과 1987년 모두 153건의 판례를 남겼다. NLJ는 하나의 판결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21개의 다양한 제목으로 판결들을 유형화하여 게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다시 시민의 권리, 형법, 경제문제, 수정헌법 제 1조, 기타 등 5개 집만으로 분류했다. 이 5개 유형의 범주는 주요한 법률적 논쟁을 포괄하고 있으며 항소심 법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분류 유형과 유사하다. 연구대상기사의 선택에 있어 주요한 문제는 대법원 관련기사에 관한 믿음만한 색인이 있는가였다. TV와 뉴스 잡지의 경우는 Vanderbilt Television News Abstracts와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라는 잘 정리된 색인이 절대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두 자료집을 통해 CBS, ABC, NBC, Time지, Newsweek지, 그리고 U.S. News and World Report지를 연구대상매체로 선정했다. 신문의 경우, 각 신문의 색인이 대법원 관련 기사의 양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대상기사는 1986년 10월 1일부터 1987년 8월 31일 간에 보도된 기사를 선택했다. 이 기간은 대법원의 1986~1987년간의 판결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방송과

시사주간지로부터 추출된 자료기사의 중요성은 이들 매체에 접하는 수용자의 규모에 달려 있다. 1986년 가을부터 1987년 봄 기간에 모든 TV 소유가구의 총 35%가 평균적으로 3개 방송의 저녁뉴스를 시청했다. 3개 시사주간지는 모두 합해서 거의 1천만부가 발행되었다.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기타의 전문가들은 주로 Time 지, Newsweek 지, 그리고 U.S. News and World Report 지를 통해 대법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경우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Chicago Tribune 등 3개 신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New York Times는 미국 내에서 가장 권위지로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정했다. New York Times는 엘리트지로서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의 간부들에게도 널리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은 이미 대법원관련 기사를 유별나게 철저히 보도하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Los Angeles Times 또한 대법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선두를 차지할 뿐 아니라 또한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정했다. 이 두 신문의 발행부수는 100만부가 넘는다. 마지막으로 Chicago Tribune은, 첫째 법률적인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둘째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셋째 미국에서 3개의 가장 큰 도시에서 발행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선정했다.

모든 대법원 관련 기사들이 앞서 제시한 5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언론에는 「기타 대법원의 활동」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다.

연구결과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의 보도다. 시민의 권리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 중 가장 적은 부류에 속했지만, 보도된 양은 상당히 많았다. 신문에 보도된 판결관련 기사의 5개 가운데 1건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 기사였지만, 그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 전체건수의 10%에 불과했다. 수정헌법 제 1조와 관련된 소송사건은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지만, 그렇게 놀랄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Solimine의 연구자료에 의해 설정된 가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와 수정헌법 제 1조 관련 판결이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은 형사법이나 경제관련 판결이 덜 보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New York Times 지가 대법원 관련 보도를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두 신문은 New York Time 지 보도의 55%에 지나지 않는다. New York Time 지 역시 수정헌법 제 1조 관련 보도기사가 나머지 두 신문의 보도량에 비해 상당히 많았으며, 실제 대법원에서의 수정헌법 제 1조 관련 판결비율의 두 배나 되었다.

세 신문 모두 판결에 관한 보도보다는 기타 법원의 활동관련 보도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Lewis Powell 판사의 사임 및 Robot Bork 판사의 임명과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기사를 제외하면, Los Angeles Times 지와 Chicago Tribune 지 모두판결 관련 보도의 양이 판결 외의 법원활동 관련보도 보다 많아진다. 어쨌든 New York Times 지의 경우, 판결 외의 활동에 관한 보도의 양이 더 많다. 소송 관련 기사와 Bork 판사 임명 관련 기사를 제외하더라도, New York Times 지는 대법원 관련 기사를 가장 풍부하게 다루는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게 된다. 시사주간지의 경우,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 준다.

시사주간지는 대법원판결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을 가장 중요한 기사로 다룬다. 기타 4 개 유형의 판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민의 권리 관련 판결을 보도하고 있다. 경제 관련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ewsweek 지는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형사소송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1%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Time 지의 보도 비율은 11%였다. 어쨌든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소송은 대충 비슷하게 보도되었다.

Solimine 은 대법원의 판결 중 15%만이 시사주간지에 보도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판결의 13%가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limine 은 시사주간지의 보도는 양적인 면에서는 적으나, 질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보도의 양이 적다는 것은 대법원 활동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오해하게 한다고 보았다.

3 개 TV 에서도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의 전체 판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많이 보도되었다.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소송은 실질적인 판결건수에 비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다. 형사소송과 경제에 관련된 소송은 별로 보도되지 않았다. 시민의 권리, 수정헌법 제 1 조, 경제관련 판결의 보도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제시한 가설들을 지지해 준다.

놀라운 사실은 CBS 와 NBC 의 기타 판결에 대한 보도기사의 양이다. 그에 관한 보도가 양 방송사의 경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TV 뉴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사에서 두 건 이상의 판결을 보도했을 경우, 그 기사는 「기타」로 분류했다. 이러한 기사가 예상보다 많았고, 결국 CBS 와 NBC 는 물론 전체적으로 「기타」보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법원 관련 보도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실은 기사의 길이와 지면에서의 위치다. 신문기사를 짧은 것과 긴 것으로 분류하면, 4 개 유형의 판결간에 큰 차이가 없다. 기사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그 보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이 제 1 면에 보도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은 3 개 신문 모두의 경우 35% 이상이 제 1 면에 보도되었다. 반면에 경제 및 형사 관련 판결은 각각 20% 정도만이 제 1 면에 보도되었다. 편집자들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방송뉴스에 있어서는 첫번째 항목으로 보도될 경우에 주요 뉴스가 된다. 기사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110 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110 초를 초과하는 모든 기사를 「긴 기사」로 분류한다. 연구기간에 대법원에 관한 기사 중 12 건의 기사가 뉴스 첫머리에 보도되었다. 형법 관련 판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이었다. 수정헌법 제 1 조와 경제 관련 판결기사가 첫 머리에 보도된 것은 모두 25%였다.

기사의 길이에서 볼 때,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보도 기사의 길이가 가장 길었으며, 각 방송사의 긴 기사 중 반수 이상이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보도였다. 경제관련 기사는 오직 하나만이긴 기사에 속했을 뿐이다.

연구결과 확실히 신문, 시사주간지, TV 등은 1986~1987 년 간에 다른 유형의 판결에 앞서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을 기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와 TV 뉴스 편집자는

기사 선택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았다. 보도된 기사의 건수 면에서 볼 때, 시민의 권리에 관한 판결이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그 다음이 형법 관련 소송이었다. 대법원 판결보도 분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타」를 제외하면,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기사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이와는 달리 신문의 경우 경제 및 형법 관련 판결이 우선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대법원의 실제 판결 건수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다. 3 개 유형의 매체 모두가 시민의 권리에 관한 소송사건을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문만이 대법원의 판결을 가장 잘 보도했음을 의미한다.

「왜곡」이라는 단어를 불균형적인 보도라는 의미로 볼 때 연방대법원 판결을 가장 크게 왜곡 보도한 매체는 시사 주간지였다. 판결을 보도한 기사를 순위별로 보면, 두 번째를 차지하는 형법 관련 판결만이 실제 판결의 순위와 부합할 뿐이다. 더욱이 잡지에 보도된 기사의 건수는 상당히 적어, 오직 평균 13 개의 판결기사만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이는 TV 보도의 반 이하이며 신문보도의 12%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는 가설을 입증했다. 시민의 권리와 수정헌법 제 1 조에 관련된 사례들은 많이 보도된 반면에 경제와 관련된 판결들은 비교적 적게 보도되었다. 또한 대법원의 소송사건가운데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은 수정헌법 제 1 조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건의 보도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길이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수정헌법 제 1 조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기사가 지나치게 길게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현상은 TV의 경우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신문보도의 경우도 비슷했다.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사건은 다음의 이유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즉 그와 관련된 판결은 3 개 유형 매체의 기자, 편집자 그리고 제작자들에 의해 하나의 획기적인 소송사건으로 인식되어졌다.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보도기사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것이다.

확실하게 많이 보도된 3 개의 소송사건은 모두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것들로 Board of Directors of Rotary International v. Rotary Club of Duarte 사건, California Federal Savings & Loan v. Guerra 사건, 그리고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사건 등이었다. Duarte 사건에서는 Rotary Club 에 여성들의 참여를 명한 California 주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Guerr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에게 무급휴가를 인정할 것을 규정한 California 주 법률을 지지했다. Johnson 사건은 한 시당국의 비백인 소수민족이나 여성의 고용 촉진계획하에서 동일하게 자격이 인정되는 남성후보에 우선하여 특정 여성후보자를 승진시킨 것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그 계획의 실현을 지지했다.

본 연구에서 「시민의 권리」라는 넓은 개념으로 분류된 판결은 14 건이었지만, New York Times 지의 경우, Rotary Club, Guerra, 그리고 Johnson 등의 사건에 관한 보도가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판결 보도기사의 69%를 차지했으며, Los Angeles Times 지와 Chicago Tribune 지의 경우는 73%에 달했다. Johnson 소송사건은 New York Times 지의 경우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판결 보도의 50%에 달했으며, Los Angeles Times 지의 경우는 30%, Chicago Tribune 지의 경우는 26%였다. 3 개 시사주간지는 위의 3 개 판결을 하나의 기사로

보도하였고, 3 개 방송은 ABC 가 Guerra 사건 판결을 두 기사로 보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사주간지와 동일하게 보도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건수와 판결관련 보도가 양적인 면에서 일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시민의 권리에 관련된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가장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물론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소송사건이 가장 적은 유형의 판결건수에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은 연구대상이 된 매체의 편집자나 제작자의 인식에 달려 있고, 그것이 「의제설정자」로서의 언론의 중요 역할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Rotary Club 사건과 Guerra 사건, 그리고 Johnson 사건 등은 최근의 헌법 교과서와 법률전문지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1986~1987 년간에 별로 주의를 끌만한 것이 못되는 형법과 경제관련 논쟁들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보도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기간에 위의 두유형에 속하는 소송사건법률과 관련된 몇몇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사건으로는 U·S v. Salerno 사건(1984 년에 제정된 Bail Reform Act 의 타당성과 관련된 사건)과 Arizona v. Mauro 사건(묵비권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녹음기의 이용에 관한 사건)과 몇 건의 사형선고 사건(McCleskey v. Kemp 사건, Summer v. Shuman 사건, Tison v. Arizona 사건 그리고 Buchanan v. Kentucky 사건 등)이 있었다. 경제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음주 연령을 21 세로 규정한 연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건인 Pennzoil v. Texaco 사건과 South Pakota v. Dole 사건 등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 이 소송사건은 확실히 대법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발달에 상당히 중요하며, 많은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의 판례 가운데 소홀히 보도되는 문제들을 제쳐놓더라도, 대법원 그 자체의 모습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언론은 많은 다양한 영역의 미국 법률 발전에 공헌한 대법원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1986~1987 년간의 대법원의 활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에 대한 공중 지지의 많은 부분이 대법원 판사들이 행한 중요한 활동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